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영옥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2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발 의 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태근, 임현주, 정병기

1. 제안이유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인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을 간접흡연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접흡연과 금연구역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

나. 금연구역 추가 지정(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건강정책과

라.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를 “법 제9조의5”로 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서울특별시장 및 성북구청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구 관할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 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서울특별시장 및 성북구청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4. “금연지도원”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4. ---------- 법 제9조의5----------.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구 관할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